

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36조제2항”을 “법 제36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을 “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제43조제1항 중 “전문분야별”을 “국제식품규격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·검토하기 위해 국제식품규격분과위원회와 전문분야별”로 한다.

제65조의2제7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

제67조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2호러목1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)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		300	400	500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	-----	-----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영업의 종류) <u>법 제36조제2항</u> 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9. (생 략)	제21조(영업의 종류) <u>법 제36조제3항</u> ----- -----. 1. ~ 9. (현행과 같음)
제34조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8조제1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. 1. ~ 4. (생 략)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34조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기관</u> <u>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</u> ----- 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</u>
제43조(분과위원회) ① 심의위원회에 <u>전문분야별로</u>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	제43조(분과위원회) ① ----- --- <u>국제식품규격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·검토하기 위해 국제식품규격분과위원회와 전문분</u>

제65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식품의약품안전처장(제34조 또는 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,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~ 6. (생략)

<신 설>

7. ~ 14. (생략)

야별---.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65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
정보의 처리) -----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
에 관한 사무

8. ~ 15. (현행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)

제67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 101조제1항부터 <u>제3항</u>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은 별표 2와 같다.	제67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---- ----- <u>제4항</u> ----- ----- -----.
--	---